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4
----------	------

2017년 9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 8. 2. 감경자(양천) 의원(찬성자 김태수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7. 8 2.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7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 규칙」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이외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청원의 진행절차와 처리여부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이후 소개 의원에게 그 처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의 처리 절차상 소개의원에게 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원의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통보대상에 청원인 외에 소개위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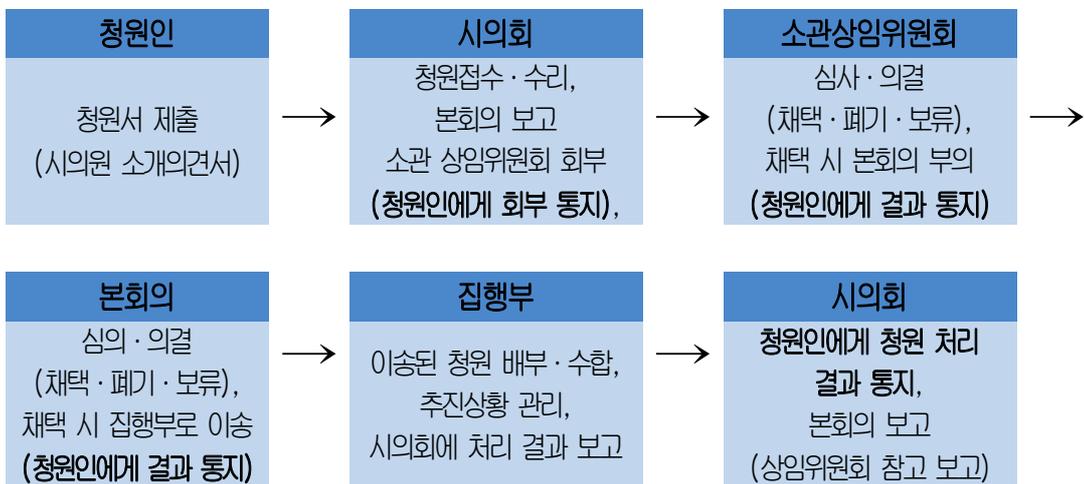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청원 소개의원에게 그 청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청원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음.

2 청원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 등 통보대상에 소개의원 추가(안 제11조)

- 청원은 시민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와 시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시민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임.
- 서울시의회(이하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청원 심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원(이하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후 처리되고 있음.

<그림 1> 청원 처리 과정



- 그러나 현행 의회 청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에는 청원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통지 대상에 청원인만 명시되어, 청원의 소개의원은 자칫 그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채 소개한 청원 처리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청원 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청원인 뿐만 아니라 청원의 소개의원에게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원 제도를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임.

<표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p> <p>1. ~ 6. (생략)</p>	<p>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 ----- 청원인과 소개의원----- -----.</p> <p>1. ~ 6. (현행과 같음)</p>

-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 청원 심사·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9대 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살펴보면,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보다는 해당 청원의 지역 출신 의원에게 소개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80.8%로 대부분을 차지함(표 2 참조).
- 이렇듯 청원의 대부분이 지역 현안이고 해당 지역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청원 심사 과정과 그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의원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표 2> 제9대 청원 소개의원의 특성

2017.8.24일 기준

구분		청원 관련 지역 출신		계
		관련 지역	비(非)관련 지역	
청원 관련 상임위 소속	관련 상임위	11건 (15.7%)	7건 (9.6%)	18건 (24.7%)
	비(非) 관련 상임위	48건 (65.8%)	7건 (9.6%)	55건 (75.3%)
계		59건 (80.8%)	14건 (19.2)	73건 (100%)

- 특히 청원 소개의원은 의회에서 그 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원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통지받아야 할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청원을 소개한 의원에게도 청원 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청원의 대부분이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 지역 의원을 소개의원으로서 두고 있다는 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원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소개의원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자(양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44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일

발 의 자 : 김경자(양천) 의원(1명)

찬 성 자 : 김태수, 유찬중, 이현찬, 김혜련,
박운기, 김제리, 이명희, 서윤기,
오봉수, 한명희, 박호근, 김동욱,
김인제 의원(13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이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이외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청원의 진행절차와 처리여부 등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이후 소개의원에게 그 처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의 처리 절차상 소개의원에게 대한 청원 처리 결과 보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원의 진행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통보대상에 청원인 외에 소개의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로, “심사,”를 “심사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개하는”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으로, “소개 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개의견서”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장은”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지차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청원인에 대한 통지)”를 “(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원인”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의회</u>----- ----- <u>심사와</u> ----- -----.</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u>소개하는 서울특별시회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u>를 붙여야 한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u> ----- <u>소개의견서</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u>의회</u>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u>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u>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u>의장은</u>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u>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u></p>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3. (생략)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 6. (생략)

다)은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호

의 -----

-----.

1. ----- 지방자치단체-----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 청원인과 소개의원-----.

1. ~ 6. (현행과 같음)